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

(이학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115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.

발 의 자 : 이학래, 강희향, 김영미,  
김윤정, 김효식, 문정애,  
백남환, 서종수, 송병길,  
이동주, 이필례, 유호렬,  
전승학, 차재홍

## 1. 제안이유

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## 3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7. 11.27. ~ 12. 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기념행사 등)**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부부의 날 기념행사
2.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**제4조(보조금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40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4조(보조금 지원) 제1~2항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부부의 날 기념 행사등 예상비용은 연 6,000천원으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김영호
연 락 처	02-3153-8937